

군포시 어린이·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어린이·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9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2월 13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 어린이·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어린이·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

(김귀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.

발 의 자 : 김귀근, 이길호, 신경원,
신금자, 이우천, 이훈미,
이동한, 박상현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어린이·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·영양 관리를 지원하고, 어린이의 균형 성장 및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센터의 설치 및 기능 (안 제3조)
- 다. 지원 대상 (안 제4조)
- 라. 사무의 위탁 (안 제6조)

3. 관련법령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
군포시 어린이·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린이·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”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.
2. “취약계층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·장애인 등을 말한다.
3. “급식소”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군포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.
4. “위생관리”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식품,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
 - 나.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·지도
 - 다. 급식소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·지도
5. “영양관리”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

보제공,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.

제3조(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군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.

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,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
2. 급식소 위생·안전·영양관리 교육자료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3. 급식용 식단 개발·보급 및 영양지도
4.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컨설팅
5. 우수 농·축·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지원 대상)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4.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

제5조(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) ① 센터에는 센터장, 영양사, 위

생사 등 전문 인력,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센터의 위생·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,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.

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·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·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.

제6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「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평가결과 반영)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9조(지도 감독 등)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·점검할 수 있으며,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·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,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군포시 어린이급식관리
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